

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3. 5. 26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5. 26

다. 상정일자 : 제112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제1차 총무위원회(2003. 6. 3)

2. 제안설명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『사하국민체육센터』를 건립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- 공립시설 『햇님어린이집』은 건물의 노후가 심하고 각종 시설이 보육관련 법령기준에 미달되며 대로와 인접해 안전사고 우려 및 소음발생등 보육환경이 타시설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전 신축하여 보육아동들에게 좋은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(m ²)	구 조	시 설 개 요	소요예산
사하국민체육센터 건립	건물 신축	감천동 702-1 729번지	· 연면적 6,610m ² (2,000평) *부지면적 3,458m ² (1,073평)	철 근 콘크리트	· 규모 : 6,610m ² (2,000평) ▷ 지하1층, 지상3층 · 시설내용: 실내수영장, 다목적실내체육관, 체력단련실, 주민복지시설, 주차장등	10,800,000
햇님 어린이집 이전신축	건물 신축	당리동 309-5 (희망공원내)	· 연면적 684m ² (207)평 *부지면적 989.3m ² (299평)	철 근 콘크리트	· 규모 : 684m ² (207)평 · 시설내용 : 어린이집, 주차장등	850,000

4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건은 우리구가 특수목적용을 위해 확보해 놓은 부지에 국민체육센터와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을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취득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
 - 사하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, 지난 1월 109회임시회시 부지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, 소요예산 108억은 체육기금, 시비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확약이 된 상태에 있어 구비 약39억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, 이 또한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 잔액36.6억원을 사용토록 합의가 되어있어 예산확보에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
 - 당리동 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소요예산 850백만원은 2003 1회추경에 550백만원이 상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300백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 되어있는등 건립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
- 위 2건은 모두 우리구 주민복지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